# 법률자문계약서

주식회사 아토(이하 "갑"이라 한다)와 법무법인 지안(영문 명칭: Lee Kim & PARTNERS,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을"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자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다.

## 제 1 조 (법률자문용역의 대상)

본 계약상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용역의 대상은 "갑"이 중국 XIYUE 사(관련된 중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상사중재사건과 물적분할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관련 준비자료의 검토, 작성, 기타 "갑"이 질의하는 관련 법률문제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로 하며 본계약에 의한 자문의 시작 시점은 2009년 2월 2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주체 및 변경)

본 사건의 법률자문계약의 주체는 "갑"인 주식회사 아토로 체결하되, "갑"의 물적분할이 완료 된후 즉시 본 계약의 "갑"의 지위를 물적분할된 신규법인이 주체의 지위를 승계하고, 제반 계약의 거래 관계 또는 비용의 지불관계등을 신규법인명의로 진행토록 한다.

단, 물적분할이 계획과 달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의 주체 또는 승계 여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 제 3 조 (보수 및 비용)

(1) 착수금: 금 삼천만(30,000,000)원으로 하며, "갑"이 물적분할 완료 후 10 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중재로 해결되기 이전 사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 또는 해결이 예상되경우는 2일 2일부터 자문한 시간에 대해 시간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한다.

시간 비용은 "갑"과 체결된 자문 계약에 준한다.

(2) 성공보수: "갑"이 XIYUE 사에 청구하여 합의 또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미화 일백만불까지는 5%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며, "갑"이 수령하는 금액이 미화 일백만불을 초과할 경우는 매 미화 일백만불씩에 대하여 1%로 하되 성공보수의 산정 기초가 되는 수령액 상한은 미화 삼백만불로 하고 초과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지급의 시기는 중재 또는 화해가 최종 확정되는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 4조 (제반 관련비용)

"을"이 "갑"의 용역의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본 계약서 제 1 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출장비 등 제반 관련비용과 관련하여, 제 2 조의 착수금의 10% 상당액까지는 "을"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초과된 비용은 "을"이 "갑"에게 증빙을 통하여 청구한다.

## 제 5 조 (비밀유지의 의무)

갑과 을은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 및 기타 본건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만,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거나 관련법규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6 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본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수정 및 변경은 그러한 행위의 구속을 받는 당사자간의 서면상의 기명날인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한다.

#### 제 7조 (계약의 변경 등)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009. 2.13.

"갑"

주식회사 아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2 다 302 호

대표이사 문 상 영

(1)

66을 99

법무법인 지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 B동 13층

대표변호사 이 명

